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46호

『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3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('15.8.22)

2. 관련근거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5조의3

3. 주요내용

- 벤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
- 재검토기한 설정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

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(☎ 042-481-8953)

* e-mail : 272@smba.go.kr

4. 기타사항 :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공청회, 간담회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